

[별표 1]

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인력 편성운영 기준 (제6조제2항 관련)

구분	무인비행장치 1대	무인비행장치 2대
인력(명)	3명	6명
구성기준	통제관 1명, 조종자 1명, 부조종자 1명	통제관 2명, 조종자 2명, 부조종자 2명

<비고>

- 가. 운용인력은 현장 활동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기준으로 한다.
- 나. 무인비행장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통제관을 1명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- 다. 운용인력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, 진압·구조·구급대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.